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현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843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조문정비 (김현정의원안, 정부안)	2

I . 개요

1. 임미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843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현정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7. 17.

(3) 회 부 일 : 2024. 7. 18.

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17조의4제2항, 제17조의6제2항).조의2제7호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조문정비 (김현정의원안, 정부안)

현행	개정안
☐ “대차대조표” ☐ “직무보조자”	☐ “재무상태표”로 용어변경 ☐ “사무직원”으로 용어변경 ○ 시행일: 2025. 1. 1. ○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관세사의 직무보조자 또는 직무보조자였던 자는 이 법에 따른 관세사의 사무직원 또는 사무직원이었던 자로 간주

* 김현정의원안 2024. 7. 17. 제출 (의안번호 1843), 정부안 2024. 8. 29. 제출 (의안번호 3387)

☐ 개정안은 이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직무보조자’는 ‘사무직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현행 「관세사법」 제17조의4 및 제17조의6¹⁾에서는 기업의 재정 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도식화한 표를 뜻하는 ‘대차대조표(貸借對照表)²⁾’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어려운 한자어로서 국민이 쉽게 그 뜻을 알

1) 「관세사법」

제17조의4(자본금 등) ① 관세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 관세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제1항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보전하거나 증자(增資)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증여한 경우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計上)한다.

④ 관세청장은 관세법인이 제2항에 따른 보전 또는 증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전 또는 증자를 명할 수 있다.

제17조의6(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① 관세법인은 자기자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자기자본”이란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을 말한다.

2) 기업의 재정 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도식화한 표

기 어려우므로 보다 쉬운 용어로 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³⁾,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이미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용어 변경한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 또한 현행 「관세사법」 제9조제5항⁴⁾등은 관세사의 직무를 보조하기 위해 채용되어 통관절차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뜻하는 ‘직무보조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동법 제13조의5는 ‘관세사나 그 사무직원은 통관업의 수입을 위하여~’라는 규정을 두고 있어 관세사의 직무를 보조하기 위해 채용되어 통관절차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직무보조자’ 및 ‘사무직원’로 혼용되어 조문 간 통일성이 저해되고 있음. 한편, 기타 전문자격사법⁵⁾ 역시 전문자격사별 직무를 보조하기 위한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2건의 개정안은 동법의 ‘직무보조자’라는 용어를 일괄적으로 ‘사무직원’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조문간 통일성을 제고하며, 기타 법률과의 정합성을 높이는 취지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3) 국회 법제실에서는 법제처 등과 협의하여 해당 용어를 ‘재정상태표’로 순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법제실, 「법률별 용어 정비 안내문」, 2020. 9. 참조)

4) 「관세사법」

제9조(사무소의 설치 등) ⑤ 관세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관세사를 채용하거나 직무보조자를 둘 수 있다.

5) 「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변호사법」, 「변리사법」, 「감정평가사법」

문 의 처
02)6788-5158